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강선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0041 발의연월일: 2023. 2. 15.

발 의 자: 강선우·김민철·민홍철

진성준 · 김성주 · 김정호

정태호 · 김승남 · 홍정민

최종윤ㆍ허 영ㆍ김윤덕

조승래 · 강준혂 · 한정애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의료 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9곳에 발달장애인 거점병 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의료 지원 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.

이에 광역 지방자치단체마다 1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로 의무적으로 지정 및 설치·운영하도 록 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24조제3항 및 제4항 등). 법률 제 호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에는 1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

제24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시·도에는 1개소 이상의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·운영 하여야 한다.

제33조제2항 전단 중 "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" 를 "시·도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4조(재활 및 발달 지원) ① •	제24조(재활 및 발달 지원) ① •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	③
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	
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	
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거	
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. <u><후</u>	
<u>단 신설></u>	우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
	시・도・특별자치도(이하 "시
	・도"라 한다)에는 1개소 이상
	의 의료기관을 발달장애인 거
	점병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	4
해・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하	
여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	
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	
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	
는 바에 따라 행동발달증진센	
터를 설치・운영할 수 있다.	,
<후단 신설>	이 경우 시·도에는 1개소 이
	<u>상의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</u>
	• 운영하여야 한다.
⑤ ・ ⑥ (생 략)	⑤ · ⑥ (현행과 같음)

제33조(발달장애인지원센터) ①	제33조(발달장애인지원센터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시·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	2
권리보호 활동, 당사자와 그 가	
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	
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<u>특</u>	<u>\]</u>
별시・광역시・특별자치시・도	<u>· 도</u>
·특별자치도에 설치하여야 한	
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필요	
성을 고려하여 지역발달장애인	
지원센터를 시・군・구에 설치	
할 수 있다.	
③ ~ ⑦ (생 략)	③ ~ ⑦ (현행과 같음)